

내부비리 신고제도



1. 목 적

직무윤리 준수를 통하여 내부비리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고 임직원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며 신고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내부비리가 외부고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회사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위험관리체계(Risk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는데 있음.

2. 정 의

(1) 내부비리

‘내부비리’라 함은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반 법 규정, 윤리규범 및 실행지침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2)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함은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내부비리를 신고한 자 또는 직무윤리 준수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인사, 부당한 대우, 지시, 강요 및 위협 등의 보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

‘신고자’라 함은 내부비리를 인지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이나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고객, 그룹사 등)를 말한다.

3. 적용

본 '칼호텔네트워크 내부비리 신고제도'는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자문역, 대리인 등 모든 형태의 임직원과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 그룹사 등을 포함)에게 적용된다.

4. 신고대상

- 가. 본인 및 타 임직원의 제반법규, 윤리규범 및 실행지침 위반행위
- 나. 임직원의 비리행위(공금횡령, 금품수령 등)
- 다. 임직원의 회사자산 훼손 및 사적사용 등
- 라.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또는 강요(비윤리, 불법 행위)
- 마. 정당한 신고행위에 대한 보복피해(인사상 불이익, 부당한 대우, 위협 등)

5. 신고자

모든 임직원 및 관련 이해관계자(협력회사, 고객, 그룹사 등)

6. 신고절차

가. 신고자는 신고사실을 담당부서/담당자에 우편, 전자우편, 전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 번길 208(운서동)
- 전자우편 : khn@kalhotelnetwork.com
- 전화 : 032-745-2994

나. 신고자는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다.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라. 모든 임직원이 본 '칼호텔네트워크 내부비리 신고제도'를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회사 한웨이에 게시한다.

마.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고객, 그룹사 등)가 임직원 비리 발견 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룹홈페이지(칼호텔네트워크)에 게시한다.

7. 신고시 처리방법

가. 감사팀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확인 조사 실시여부를 검토한 후 담당임원에게 보고한다.

나. 감사팀은 담당임원의 지시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사팀은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라. 감사팀은 조사과정에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한 관련인의 신원과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마. 감사팀은 신고내용, 조사관련 자료 및 결과를 비밀문서로 보관하여야 하며, 법에 의하여 요구된 경우 외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8. 고려할 사항

- 가. 임직원에게 내부비리신고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교육 실시: 동료 임직원을 고발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신고한 임직원에게 대한 보복을 금지하여 신고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임.
- 나. 임직원의 비윤리 불법행위가 회사와 관련 임직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국내외 기업환경의 변화를 인식시켜, 상급자나 동료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못 본척하고 감싸주는 것이 회사를 위한 행동 될 수 없음을 공감하도록 함.
- 다. 허위에 의한 신고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임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함.
- 라. 내부비리신고제도가 조직에 위화감이나 불신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염려를 하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비리행위가 존재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건전하고 깨끗한 조직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있을 수 없음.

9. 벌 칙

- 가. 임직원이 부하 임직원에게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지시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처벌한다.
- 나. 임직원이 직무윤리 준수자 및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하여 보복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처벌한다.
- 다. 허위의 내용 또는 허위임을 인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처벌한다.

10. 부 칙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